물리치료사법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9

발의연월일 : 2019. 5. 7

발 의 자 :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여영국・이정미・정춘숙
윤종필・박지원・김상희
이인영・정성호・오영훈
신창현・전혜숙・기동민
김광수・최도자・김세연
김종대・인재근 의원
(20인)

제안이유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

추가는 됐는데... 곁다리

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정함(안 제3조).

라.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되,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10조).

사.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그 물리치료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물리치료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물리치료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사협회를 설립해야 하며,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협회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15조).

자. 협회는 물리치료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물리치료사 공제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법률 제　　　호

물리치료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리치료사의 자격, 면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리치료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치료”란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기구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과 만성근골격계질환 등의 대상자에게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가정 등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회복, 유지, 예방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물리요법적 행위를 말한다.
3. “물리치료사”란 물리치료, 물리치료에 필요한 검사 및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물리치료사의 면허 등

제3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물리치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업무
2.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3. 물리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등에 관한 업무

제4조(물리치료사의 면허) 물리치료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

제5조(전문물리치료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물리치료사의 자격 구분, 자격 인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국가시험) ①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물리치료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면허증의 교부·재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①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물리치료사의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물리치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물리치료기록부의 작성 등) 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물리치료기록을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물리치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④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신고 및 실태조사) ① 물리치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물리치료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물리치료사단체 등

제15조(물리치료사협회) ① 물리치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물리치료사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회는 제27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설립 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조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7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중앙회의 공제회 설치·운영) ① 중앙회는 물리치료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물리치료사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회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회원의 부담금 납부 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그 밖에 공제회의 조직 및 운영,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제회 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물리치료사

2.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3.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공제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21조(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 회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물리치료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공제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제22조(공제회의 재원) 공제회의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제회 회원의 부담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23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및 공제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및 공제회의 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회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앙회 및 공제회 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또는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도·감독 등

제24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물리치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면허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제2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물리치료사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제26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물리치료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물리치료사가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중앙회의 장은 물리치료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7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및 제26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 한 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물리치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자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제13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물리치료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의료기사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보고,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를 "방사선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물리치료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